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구단10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8. 28.

주 문

1.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9,603,520원, 지방교육세 10,436,350원, 농어촌특별세 5,218,17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가. 원고는 2014. 10. 16.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12. 26. [redacted]시 B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원고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사업체인 C(사업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E(사업주: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F)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 상당액으로서 취득세 119,603,520원, 지방교육세 10,436,350원, 농어촌특별세 5,218,17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4.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법인과 C은 매출처, 매출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를 C의 사업추가 내지 확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고 E에 임대하지 않았던바, 임대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법인과 C, E의 기업현황 및 관계는 아래와 같다.

법인(사업자)명		E (개인)	C (개인)	㈜ A (청구법인)	비고
대표		F	D	D (사내이사 F)	
설립(개업)일자		2004.1.15	1991.6.1.~1992.3.26.폐업(자동차부품), 1996.5.3.~2007.4.13.폐업(프레스수리) 2007.10.22.~현재(자동차부품, 프레스이설)	2014.10.16	
본점 소재지		설립: [redacted] G	현재 : [redacted]시 B	설립 : [redacted] G 2015.1.13.이후:김해시 B	
사업장 소재지		[redacted] G	김해시 H → I 산업단지(착공일, 15.7.22)로 수용	[redacted]시 B	
취득 부동산	취득일	-	-	2014.12.26	
	물건지	-	-	B, J	
주종목		제조, 금형	산업기계제작, 프레스이설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사용 지급 현황	2016년	㈜ A 기계사용료 등 4건6백만원 지급	A 프레스사용료 21건 60백만원 수입	C 프레스사용료 등 21건 60백만원 지급	
	2017년	㈜ A 가공비, 임대료,전기료 등 20건45.5백만원 지급	A 프레스사용료 6건 64백만원 수입	- C 프레스사용료등 6건 64백만원 지급 - E 기계사용료 4건 6백만원 수입 - E 가공비, 임대료, 전기료 20건 45.5백만원 수입	
주요 기계장비		-	-	600톤프레스(15.3.31취득) 2000톤프레스(15.12.24취득) 레이저가공대(15.6.26취득) 등 총 14건 844백만원	

(2) 원고 법인의 자본금은 2억 원이고, 2015년부터 각종 기계설비를 지속적으로 매입해왔으며, 원고의 2017년도 장부(고정자산관리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371,755,485원)을 포함한 기계설비 등 자산가액이 1,088,307,821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3) C, E의 종업원에 관한 채용 · 과세 자료가 없으나, 원고는 매년 7명 내지 11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정도를 고용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해왔다. 또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임을 이유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4) 원고와 C의 매출액(단위 원)은 아래와 같다.

년도	원고	위 업체
2014	15,780,000	419,259,615
2015	933,787,809	309,591,390
2016	1,423,872,896	72,331,000
2017	1,431,695,982	180,304,000
2018	1,785,374,158	363,46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5호증, 을 제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시적 사업창출 여부에 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7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 제6조는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C, E의 사업목적과 생산품이 서로 상이한 점, 생산품이 완전히 상이해야만 창업으로 볼 수 있다면, 기업가로 하여금 대규모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혀 경험없는 생소한 분야에만 도전해야 한다는 것인바, 생산품이 다소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이라고 단정할 것만은 아닌 점, ② 원고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각종 기계설비(2000톤 프레스, 600톤 프레스)를 매입해왔던바, 이는 신규투자의 성격을 갖는 점, 기계설비는 대체로 고가이면서 유형자산으로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고, 다시 현금으로 환가하기도 어려운 자산인바,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즉 원시적 사업창출을 확고하게 의도했다고 보이는 점, ③ C, E은 아직도 폐업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원고와 매출처가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매출증가액 및 증가속도에 대비해 볼 때, C의 매출이 원고에게로 단순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를 신규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설립으로 고용증대의 효과가 발생하였던바,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인정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는 원고와 C, E 사이에 대표자나 임원간 인적관계가 중복된다고 하나, 개인사업체와 법인은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1인이 수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단지 인적관계가 중복된다는 점만으로 사업확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프레스기를 임차하였음을 이유로, 창업이 아니라고 하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한 설비 외에도 다량의 설비를 구입하여 직접 소유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던바, 위 임차사실만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C이 공공사업으로 그 터전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에 흡수되었기에 원고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나, C은 폐업과 개업을 반복해온 사정(설비업이 아니라 용역업에 가깝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현재도 별도로 존속하고 있는 사정, 매출격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출은 C의 사업확장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규투자의 결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설립은 C이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여부에 관하여

E이 원고에게 기계사용료, 가공비, 전기료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회사의 규모, 전기료 등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기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